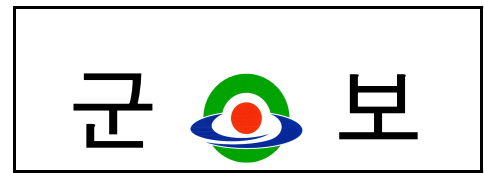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68호 2019. 5 16.(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제2349호)
- 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제2350호)
- 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제2351호)
-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2352호)

공 고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63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49호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예천 군민들에게 예천군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홍보단”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예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
3. 군민 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유지관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8. 그 밖에 사회 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SNS홍보단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예천군 SNS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홍보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 행사 및 축제 홍보,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홍보단의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홍보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행사의 시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천, 선착순, 선정 등의 방

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0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와 위촉된 SNS홍보단은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되고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50호

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군 산하기관·단체 등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예천군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51호

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예천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군수가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군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 가능한 경우
3.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

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 및 사업 : 해당 정책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전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예천군의회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성평등) 교육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 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 4.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52호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마을방송”이라 한다)”이란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해·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마을방송의 관리는 해당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운영은 지역의 읍·면장이 하되 해당마을에서 시설운영 책임

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마을방송의 유지보수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마을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 경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 전투기 및 훈련기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로 마을방송의 난청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5. 마을전체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많은 마을인 경우

② 마을방송 보수 지원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신규 설치비와 보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③ 제4조에 따른 마을방송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예 천 군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8. 12. 4.)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천군 직제 규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 간사 직제 명칭 변경(안 제4조)

- 현행 : 재산관리담당
- 변경 : 재산관리팀장

나. 법령상 근거 없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생략 조항 삭제(안 제5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경 명시
(안 제32조)

○ 미취업자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6월 0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 보내실 곳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138, 팩스 : 054-650-6139
- 전자우편 : dudtns8212@korea.kr

라.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재산관리담당”을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에 따라 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⑤ (생략) 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재산관리담당</u> 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 <u>재산관리팀장</u>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3. (생략) 4. <u>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u>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④ 생략 <u><신 설></u>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3조제3항 제21호·제22호에 따라 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u>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u>

